

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4. 10. 14.

복지문화위원회

의안 번호	404
----------	-----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9. 30. 윤석민의원 대표발의 (23명 발의)

나. 상정의결

- 제3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(2024. 10. 14.)
“원안가결”

2. 제안설명 요지(대표발의자 : 윤석민)

가. 제안이유

-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보훈수당의 적용대상을 신설하고 관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지원을 강화, 국가를 위해 희생·헌신하신 공로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적용 대상에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을 추가함 (안 제3조 제8호 신설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국가보훈 기본법」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: 논의 필요
- 입법예고: 해당 없음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이미영)

- 윤석민위원이 대표 발의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에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상의 “보훈보상대상자”를 포함하려는 것임.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는 강남구가 실시하는 각종 보훈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로,
 - 현행 조례는 강남구 보훈 사업의 지원 대상을 “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와 지원을 받는 사람”으로 규정하면서, 관련 국가보훈관계 법령을 구체적·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은 포함하고 있지 않았음.
 - 이에 결과적으로 국가유공자 등 타 보훈 관계 법령상의 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간 지원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음.
- 개정안은 강남구 보훈사업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3조에 제8호를 신설하여 조례 적용 대상이 되는 관계 법령에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를 포함하려는 것이므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.
-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을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,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바,
- 비록 보훈보상대상자의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과정에서

비롯된 것이긴 하지만, 이들의 일상적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도 넓은 의미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, 서울시 자치구 조례 현황¹⁾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구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, 이를 통해 보훈 복지의 형평성과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-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부서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지급이 누락 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없음”

5. 토론 요지 : “없음”

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. 끝.

1)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관련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를 명시한 경우: 광진구, 구로구, 금천구, 성동구, 성북구, 양천구, 영등포구(10/2 현재)

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
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적용 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남구(이하 “구” 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 대상자 및 보훈단체로 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3조(적용 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「<u>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 한 법률</u>」</p>

【관계법령】

□ 국가보훈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희생·공헌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가.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
 - 나.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
 - 다.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
 - 라.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
2. “국가보훈대상자”란 희생·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국가보훈관계 법령”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.

[전문개정 2011. 8. 4.]
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(財源)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 8. 4.]

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2조(예우의 기본이념)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(戰歿軍警)과 전상군경(戰傷軍警)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(龜鑑)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,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(榮譽)로운 생활이 유지·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8. 3. 28.]

제3조(정부의 시책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·발전시키며,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.

[전문개정 2008. 3. 28.]